

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7. 19.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
- 발 의 자: 박종길 의원 등 10명(김정희, 이진환, 이선주, 이영빈, 서보영, 임미연, 서민우, 고명욱, 박정환)
- 발의일자: 2023. 7. 7.(금)
- 회부일자: 2023. 7. 7.(금)
- 상정 및 의결: 제2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3. 7. 19.)

2. 제정이유

-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·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달서구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(안 제3조)
- 추진계획의 수립·이행, 추진상황의 점검(안 제4조~제5조)
-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·보급, 평가, 보고서 작성(안 제7조~제9조)
- 위원회 구성 등(안 제10조~제14조)

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

- 관계 법령 및 참고사항
 -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
- 비용추계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3. 7. 7. ~ 7. 17.)결과: 의견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제정 조례안은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안 제3조(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)에서는 구청장은 20년 단위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·이행하고, 법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자료·의견 제출 요구나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 이와 관련하여 법 제8조제3항에서는 국가기본전략, 구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결과, 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등을 고려 지역의 경제적·사회적·환경적 여건 변화를 잘 반영한 중·장기적인 기본전략 마련과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·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4조(추진계획의 수립·이행)에서는 구청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을 수립·변경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과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 이와 관련하여 법 제9조제3항에서는 구 기본전략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구 추진계획을 수립·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5조(추진상황의 점검)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은 서면, 현장,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,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·단체 등에 조사·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,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

있음. 이와 관련하여 법 제11조제3항에서는 2년마다 구 추진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안 제6조(조례 제정·개정에 따른 통보 등)에서는 구청장은 구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의 수립·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통보하고, 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의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의 제정·개정이나 행정계획 통보에 대해 검토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고, 구청장은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음.
- 안 제7조(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·보급)에서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·보급하고, 필요시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조사·연구를 의뢰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- 안 제8조(지속가능성 평가)에서는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 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, 필요시 공공기관 등에 자료·의견 요청이나 평가전문기관 조사·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,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이와 관련하여 법 제15조제2항에서는 2년마다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9조(지속가능발전 보고서)에서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필요시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조사·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이와 관련하여 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,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10조(위원회 구성 등)부터 제14조(운영세칙)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심의·자문기구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고,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다양한 분야 및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함.

- 본 제정 조례안은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이 제정·시행(2022. 7. 5.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, 지역의 경제·사회·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 상위법령 범위 내 적법하게 작성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음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수정가결

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 안 제10조제3항 중 “위원 중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” 을 “위원” 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| 제 정 안 | 수 정 안 |
|---|---|
| 제10조(위원회 구성 등) ①·② (생략)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<u>위원 중 제5항제2호부터 제4호</u> <u>까지에 해당하는 사람</u> 중에서 호선한다. ④ ~ ⑦ (생략) | 제10조(위원회 구성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위원</u> ----- ----- -----. ④ ~ ⑦ (현행과 같음) |